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1>보도자료</h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담당부서 : 사업화지원 Hub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포 : 2021. 9. 7.(화) ※ 분량 : 총 3매(본문 2매, 붙임 6매) • 박정원 실장, 하민기 수석연구원, 김용균 연구원 • ☎ 1599-8686(내선 3번 또는 5번) 	
보도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8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 	

KAIA, 중소기업 R&D성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지원

-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중소기업 제품, 혁신제품 지정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중소기업이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공고를 진행(9.1.~9.28.)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20년에 도입되었으며,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

- (혁신제품 개념)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 R&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 (신청대상) 국토부 R&D 종료 5년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중소기업)
- (평가지표) 시장성(20), 혁신성(4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40)
- (인센티브) ①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 ② 혁신제품 지정제품은 대해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제도** 적용
- (문의처) 1599-8686(내선 3번 또는 5번)

□ 국토교통진흥원은 접수된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달적합성 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연내 '21년 3차 지정제품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 신청 일정 및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1 참조

○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3년동안 지정되어 조달청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1.8월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총 4개 제품이며,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확보 효과로 현재까지 2.3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정된 혁신제품의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2 및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포털 (<https://hub.kaia.re.kr>)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진흥원 김종학 원장직무대행은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공고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www.kaia.re.kr)

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건설기술연구, 플랜트연구, 도시건축연구, 국토공간정보연구, 교통물류연구, 철도기술연구, 항공안전기술개발 등), 건설·교통·물류 신기술 인증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2021년 3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9월1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1 제도개요

□ 추진목적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지침(국토부고시 제2021-1044호)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

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2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016.1.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 및 공고기간] '21. 9. 1(수) ~ '21. 9. 28(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구 분	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
등록방법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등록 매뉴얼	○ (조달업체 등록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 (115번 게시글) ○ (물품식별번호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 (122번 게시글)
문의처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 (문의처, 접수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접수처	연락처	이메일 주소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기업지원팀 담당자	1599-8686 (내선 3번· 5번)	bizhub@kaia.re.kr
---------------------------------------	--------------------------	-------------------

○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 제출

No	구 성	구분	관련서식	예시/참고사항
①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신청서	필수	서식1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발급 필수
②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 완료 (성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 (상세내용)	필수	-	-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
③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2	-
④	제품 규격서	필수	서식3	-
⑤	자기 점검표	필수	서식4	-
⑥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5	-
⑦	의무이행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	서식6	- 신청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필수 적인 인증허가의 획득신고,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 ▶ 해당 없을 시, 제출 서식에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⑧	제3자 인증서-시험성적서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	-	- 해당 제품의 환경시험, 성능 시험 등 관련 제3자 인증서- 시험성적서 ▶ 기술인증 예시 : NET, NEP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⑨	지식재산권 목록 및 증빙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해당시	-	- 특허증, 프로그램등록증 등
⑩	기술이전 계약 증빙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이전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시	-	- 기술실시계약보고서(계약서 사본 포함),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⑪	신청자 사업자등록증명	필수	-	- 정부24(www.gov.kr)에서 90일 이내 발급분

* 상기 필수 서류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제품등록	신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물품식별번호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 13조, 제22조 및 제 23조 참고
↓		
신청	신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 나라장터에 등록 완료된 물품만 신청 가능
↓		
서류검토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
↓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의 제조현장(신청기업 또는 위탁생산 기업)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
↓		
서류/발표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혁신성을 평가*하며, 필요시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종합평가점수(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인정
↓		
심의예정 공고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일 이상)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평가기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구분	심사기준	비고
현장평가	<p>1. 제품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p>2. 연구개발기술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p>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p>4. 제품의 성능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p>5. 기타 확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별지 제4호 서식
서류평가	<p>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p> <p>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의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p>나. 공공구매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p>다. 현안의 시급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p>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p>2. 시장성(20)</p> <p>가. 기대 시장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p>나. 타 산업 파급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p>3. 혁신성(40)</p> <p>가. 기술·제품의 신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p>나. 기술·제품의 탁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p>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별지 제5호 서식

① (주)래도 / 교통안전표지



- 악천후 상황에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판독거리가 향상된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② (주)래도 / 교통정보전광판



- 악천후 상황에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판독거리가 향상된 교통정보전광판기상악화 조건에서도 시인성 및 판독성 개선

③ (주)건아정보기술 / 무인교통단속장치



- 비매설식 장비(카메라 + 레이더 센서)로 3차로를 동시 단속, 차량 검지장치, 교통량 측정장치로 활용

④ 유진기공산업(주) / 철도용 연결기



- 전기적인 연결 허용하는 래치 타입의 자동연결기로서, 세트 단위의 두 열차 간 수동 작업 없이 연결이 가능
- 높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강도와 EN16019 규격 기준 만족하는 측면 및 수직 큰 연결 범위